

# 공직선거법

문 1. 「공직선거법」상 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된 후 실시한 첫 선거의 선거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- ②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·시·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④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「주민등록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.

문 2. 「공직선거법」상 용어와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만으로 구성된 5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는 허용된다.
- ②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이다.
- ③ 회계책임자라 함은 「정치자금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회계책임자를 말하고,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·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.
- ④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·단체는 그 기관·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문 3. 「공직선거법」상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투표관리관을 제외한 투표참관인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없다.
- ③ 정당·후보자·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을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.
- ④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직원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문 4. 「공직선거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·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,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, 「공직선거법」 제9조제1항의 「공무원」에 포함된다.
- ②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,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「공직선거법」 제9조제1항의 「공무원」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「공직선거법」 제9조제1항은 단순한 선언적·주의적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이 동 조항을 위반한 경우라도 구체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.
- ④ 「국가공무원법」은 정무직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데 반하여, 「공직선거법」 제9조제1항은 그들로 하여금 정치활동 중 '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'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, 이 법률조항은 선거영역에서의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「국가공무원법」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.

문 5. 「공직선거법」상 재선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천재·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,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(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)이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.
- ㄴ.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,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할 수는 없다.
- ㄷ. 천재·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,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나,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.
- ㄹ.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확정되어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,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하고,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 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.

① ㄱ, ㄴ

③ ㄴ, ㄷ

② ㄱ, ㄹ

④ ㄷ, ㄹ

문 6. 「공직선거법」상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해당 선거구 밖의 대규모점포에서 배부될 홍보전단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·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·배부할 수 없다.
- ③ 국회의원 비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④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
문 7. 「공직선거법」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후보자의 배우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
- ②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후보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그 선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.
- ③ 예비후보자가 퍼켓을 노상에 게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들고 있게 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.
-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,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·시·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·시·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문 8. 「공직선거법」상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후보자가 혼인한 아들의 최근 5년간의 소득세·재산세·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(10만 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)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
- ㄴ.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경우
- ㄷ. 정당이 비례대표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초과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
- ㄹ. A광역시장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둔 국회의원이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

- ① ㄴ, ㄷ  
③ ㄱ, ㄴ, ㄷ

- ② ㄴ, ㄹ  
④ ㄱ, ㄷ, ㄹ

문 9. 「공직선거법」상 지역구국회의원의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탁금을 반환한다.
- ②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는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예외적이고 객관적인 사유에 한정함이 상당하다.
-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한 후 그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그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게 된다.
- ④ 지역구국회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300만 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
문 10. 「공직선거법」상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,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② 정당은 중앙당의 시·도당·창당승인취소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후보자등록 후에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.
- ③ 임명에 의한 정무직공무원과 비교할 때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만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별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.
-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시·도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의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, 어느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추천받은 1명의 여성후보자에 대한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면,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·도의원선거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.

문 11. 「공직선거법」상 지방선거에서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비용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선거벽보의 첨부 및 철거의 비용
- ㄴ.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
- ㄷ.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식비
- ㄹ. 선거방송토론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
- ㅁ.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

- ① ㄴ, ㄷ  
③ ㄱ, ㄴ, ㅁ  
② ㄷ, ㄹ  
④ ㄷ, ㄹ, ㅁ

문 12. 「공직선거법」상 선거일 후에 한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은?

- ① 낙선한 후보자가 신문에 지지에 감사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.
- ② 당선된 후보자의 가족이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회를 개최하였다.
- ③ 낙선한 후보자가 「공직선거법」 제79조제3항에 의하여 선거운동 기간 중에 허용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담을 할 때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용하여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였다.
- ④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·면·동마다 1매의 당선사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.

문 13. 「공직선거법」상 투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10명 미만의 거소 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·시설의 장에게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없다.
- ②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·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.
- ③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10명 이상 거소 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일시·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병원·요양소·수용소·교도소 및 구치소의 경우에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각 기관·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.

문 14. 「공직선거법」상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조치 및 조사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「공직선거법」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 벽보·인쇄물·현수막 기타 선전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첨부 등의 중지 또는 철거·수거·폐쇄 등을 명하고, 이에 불응할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.
- ㄴ.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·신문·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·제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「공직선거법」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·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.
- ㄷ.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정당·후보자의 요청에 의하여 「공직선거법」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 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.
- ㄹ. 읍·면·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·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ㄴ  
③ ㄴ, ㄷ  
② ㄱ, ㄹ  
④ ㄷ, ㄹ

문 15. 「공직선거법」상 선거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 
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대통령선거·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함으로써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·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.
- ② 1년 이상의 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다.
-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에게 후보등록신청 시에 1,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 등록한 경우에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다.

문 16. 「공직선거법」상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 
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각 후보자 1인이 게시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의 개수는 동일하다.
- ②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의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다.
-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누구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.
- ④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간에 기탁금 반환의 조건이 다르다.

문 17. 「공직선거법」상 선거인명부 및 거소·선상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12일에, 거소·선상투표신고인 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.
- ㄴ.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·시·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- ㄷ. 「해운법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(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「선박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)에 승선한 선원이 선거권을 가진 경우,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때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팩스밀리로 선상 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.
- ㄹ. 병원 또는 요양소에 기거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만이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ㄷ  
③ ㄴ, ㄷ

- ② ㄱ, ㄹ  
④ ㄴ, ㄹ

문 18. 「공직선거법」상 선거의 기본원칙 및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원 제·보궐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거나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.
- ② 선상투표도 선거권자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단지 그 송부만이 모사전송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,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.
- ③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, 선거운동의 자유의 성격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,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'자유를 원칙으로, 금지를 예외로' 하여야 하고, '금지를 원칙으로, 허용을 예외로'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.
- ④ 당내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·평등·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만, 정당의 자율성 존중에 근거하여 대리투표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.

문 19. 「공직선거법」 제93조제1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 
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제93조(탈법방법에 의한 문서·도화의 배부·캐시 등 금지)

-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(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(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·정책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지지·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, 인사장, 벽보, 사진, 문서·도화, 인쇄물이나 녹음·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·첩부·살포·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## 1. ~ 2. 생략

- ①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갑이 선거일 전 60일에 자신의 이력과 성명 그리고 일정한 구호를 담은 A4용지 규격의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한 것에 대하여,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금지한 것은 갑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.
- ② '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'이라는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송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,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.
- ③ 위 규정은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시각이나 청각 또는 시청각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.
- ④ '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'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.

문 20. 「공직선거법」상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자로서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- ㄱ.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중국 국적자
- ㄴ. 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
- ㄷ.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대표자
- ㄹ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

- ① ㄴ  
③ ㄴ, ㄷ  
② ㄱ, ㄹ  
④ ㄱ, ㄷ, ㄹ